

입 · 퇴 소 자 관 리 규 정

(2025 년)

사업장명 : 사회복지법인 고성평화의집 효경의집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268-92
전화번호 : 055-673-6637
사업종류 :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 조명숙
시설장 : 장형욱

입 · 퇴 소 자 관 리 규 정

1. 입 소 대 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가능자
- (2)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를 희망하는 자

2. 입 소 정 원

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 60명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 집 방 법

본 시설의 모집방법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4. 입 소 절 차

입소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가 입소신청
- (2) 입소대상자 시설 이용에 필요한 건강검진
- (3) 수급자에게 입소관련 사항 설명
- (4) 시설 입소

5. 구 비 서 류

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2)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3) 전원연계기록지 1부 (요양시설 이용자)

-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보호자 - 환자와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 (5)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의뢰서 1부
- (6) 수급자 증명사진 1부

6. 입 소 계 약 에 관 한 사 항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단, 장기요양 인정서의 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24시간 보호와 요양, 치료 재활훈련을 제공하며,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노인요양서비스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 2025년도 수가 계산표

(30일 이용기준)

구분			식재료비	본인부담금		합계	비고
2.3:1	1등급	1일 수가 : 86,030원	210,000원	20%	516,180원	726,180원	
				12%	309,700원	519,700원	
				8%	206,470원	416,470원	
	2등급	1일 수가 : 79,810원		20%	478,860원	688,860원	
				12%	287,310원	497,310원	
				8%	191,540원	401,540원	
	3등급	1일 수가 : 75,360원		20%	452,160원	662,160원	
				12%	271,290원	481,290원	
				8%	180,860원	390,860원	
2.1:1	1등급	1일 수가 : 90,450원	210,000원	20%	542,700원	752,700원	
				12%	325,620원	535,620원	
				8%	217,080원	427,080원	
	2등급	1일 수가 : 83,910원		20%	503,460원	713,460원	
				12%	302,070원	512,070원	
				8%	201,380원	411,380원	
	3등급	1일 수가 : 79,240원		20%	475,440원	685,440원	
				12%	285,260원	495,260원	
				8%	190,170원	400,170원	
※ 감경대상자는 감액 비율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4)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비급여 비용으로 당해 연도에 책정된 이미용비,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등이 있다.
- ②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진료 후 다음 달 명세서에 청구하여 대납한다.

(5)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의 보호자는 시설에 어르신에 필요한 서비스와 의문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 및 요구할 수 있고 어르신의 심신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그에 따라 행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 ① 수급자가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시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시
- ③ 2회 이상의 이용료 체납으로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 ④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 ⑤ 장기간 입원 또는 외박을 하할 경우, 다만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 유지
-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 ⑦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서비스 수가 산정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금액을 공지 후 변경된 월부터 적용

② 식재료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용의 상승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금액을 공지 후 변경된 월부터 적용

(8) 특별침실제공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용한다.

(전염병 또는 감염병, 임종 등 수급자에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침실 사용)

7. 퇴 소

- (1) 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보호자와 사전 협의 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다.
- (2) 시설장은 수급자가 상습적인 이상행동 및 폭행 등으로 함께 생활하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퇴소할 수 있다.

8. 시 설 물 배 상

- (1)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9. 배 상 책 임 및 면 책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경의집은 이용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효경의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상해를 당했거나, 수급자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